

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(이재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이재강 · 이훈기 · 허영
진성준 · 백승아 · 김윤
민홍철 · 이광희 · 박해철
박지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저출생 ·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,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언어 역량 및 네트워크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닌 인적 소프트파워로서 주목받고 있음. 특히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경우 역사적 ·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하여 국내에 적응 · 정착하기 유리하므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경제 ·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됨. 이에 더하여 과거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,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재외동포 후손에 대하여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.

그간 「재외동포기본법」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설치,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왔으나,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가장 실질적인 역할

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 추진체계와 지원근거가 미비하였음.

이에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한 육성 및 지원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학업·취업·창업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지역 특화 정주형 인재로서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「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을 제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학업·취업·창업·정착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육성·지원·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재외동포청장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,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.
- 다.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,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, 부처 간 조정 및 협력에 관

한 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함(안 제7조).

라.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, 관련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(안 제8조).

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재외동포 청년의 국내 정착을 위해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음(안 제9조).

바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
사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정주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지원, 주거 안정 지원,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1조).

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유치와 학업·취업·창업·정착 지원 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육성·지원하여,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거주국의 재외동포청년 인재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재외동포청년 인재”란 「재외동포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 중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,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·기술·역량·태도 등 능력과 품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

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

나.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,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, 「울산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「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

- 다.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
2.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[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(出捐金)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]에 재직 중인 사람이거나 국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
 3. 해외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해외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국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

제3조(기본 원칙)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.

1.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2.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

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- ② 국가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, 제7조에 따른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다만,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
2.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재원 확보 및 배분
3.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국내 취업·창업 및 정착을 위한 정책
4.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5. 제9조에 따른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
6.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위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
7. 재외동포청년 인재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산학협력
8.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④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⑤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·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·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) 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장 소속으로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지원위원회(이하 “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1.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2.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- 4.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
- 5.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민·관 협력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②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.
- ③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
 - 가. 대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, 교육·훈련 또는 취업·고용 등 인재 양성·활용 관련 정책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 - 나.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외동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④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인재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⑤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에 사무국을 둔다.
- ⑥ 재외동포청년인재위원회, 실무위원회, 사무국의 조직·구성·운영

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8조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·관리 등) ① 재외동포청장은 기본계획·시행계획을 각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고 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하고,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관한 통계(이하 “통계”라 한다)를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을 준용한다.
- ②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관련 기업·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재외동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를 전산화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·유지 및 관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.

- 제9조(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학업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

한 기간 동안의 국내 체류 등의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절차, 지원 내용, 장학금 및 학업장려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취업·창업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1조(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정주하며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외동포청년 인재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지원 및 각종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
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3.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건 조성
4.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체류자격 부여 우대에 관한 사항

5. 재외동포청년 인재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

6.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 지원

7.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 유치 및 육성,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역 내 취업·창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

2. 지역 내 거주 및 생활시설의 구축 및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

3. 그 밖에 재외동포청년 인재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③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년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금의 환수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
2.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
3.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

4.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1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